<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3920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0-28	홈페이지 주소	kaviarf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2-19	이메일 주소	@ineight.kr

마라통닭

정보공개서

(주)캐비아에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캐비아에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가맹본부의	02-515-0244
사무소의 소재지	3층(신사동)	대표 팩스번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02-6670-363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6670-363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 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 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E지	주 소			
	마라통닭	외 19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5, 3층(신사동)			
ᄼᅎᄼᆌᆸᆸ아ᄓᆒᇁ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캐비아에프	2021.08.05.	2021.08.05.	남택호	02-6670-3633	02-515-0244	
	법인등록번호	110111-79	981792	사업자등록번호	404-81-4714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미리토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3층(신사동)				
대표	남택호	마라통닭 외19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137H	남택호	02-6670-3633	02-515-0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2층(신사동)		
계열회사	㈜굿손	굿손(GOODSON)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기 글 <u>외</u> 시			남택호	02-6670-3633	02-515-0244		
	법인등록번호	110111-8030176	사업자등록번호	320-86-02212	-		
	㈜로스트인	로스트인홍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2층(신사동)				
게여히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계열회사			남택호	02-6670-3633	02-515-0244		
	법인등록번호	110111-8029492	사업자등록번호	572-81-0244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2층(신사동)		
게여취기	㈜에스프레소	다이브에스프레소 클럽 외2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계열회사		크립 피스케	남택호	02-6670-3633	02-515-0244		
	법인등록번호	110111-8029426	사업자등록번호	569-88-02164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가 정보공개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 영업표지	일자	주 소	대표자
다른 기업에 가맹 사업 일부를 인도함	㈜꼬바 / 굿손(GOOD SON)	2022.0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5, 2층 (신사동)	김행석
다른 기업에 가맹 사업 일부를 인도함	㈜로스트인 / 로스트인홍콩	2022.0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5, 2층 (신사동)	김행석
다른 기업에 가맹 사업 일부를 인도함	㈜에스프레소 / 에스프레소클 럽다이브	2022.0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5, 2층 (신사동)	김행석
다른 기업에 가맹 사업 일부를 인도함	㈜에스프레소 / 쿠커리	2022.0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5, 2층 (신사동)	김행석
다른 기업에 가맹 사업 일부를 인도함	㈜강탄에프엔 씨 / 심볼	2024.02.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 23, 3층 3491호(필동3가, 중구톻일회관)	신재성

- ① "쿠커리(cookery)" 브랜드의 경우, ㈜에스프레소로 양도된 이후 "엔젤비스켓"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② "에스프레소클럽_다이브" 브랜드의 경우, ㈜에스프레소로 양도된 이후 "다이브에스프레소클럽"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③ "심볼" 브랜드의 경우, ㈜강탄에프엔씨로 양도된 이후 "강탄"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명 칭	마라통닭
상 호	마라통닭 OO(지역명)점
상표(서비스표)	마라통닭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에 대한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변동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표지 등의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여 비용의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가맹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54,390	47,856	806,534	0	-188,704	-183,465
2022년	3,304,004	2,473,373	830,631	835,651	17,127	68,120
2023년	3,836,243	3,167,859	668,383	844,794	45,506	-206,271

- ※ 2022년 당시순이익은 세무조정으로 24,097에서 68,1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별첨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현재 마라통닭 외 19개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경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점 모집중으로 상기 매출액은 물류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2022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단어티	ΛΙΕ	사업경력 이름 현 직위				
관련여부	이름	연 식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남택호	대표이사	2023.3~현재	(주)캐비아에프 대표이사	경영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되었스/대/
시엄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	1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관계	상호	영업표지	업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기간	비고
	_1			기타			가맹본부가
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굿손	기타 외국식	20214616	21.11.05.~22.04.14.	22.04.15.에 양도함
				71 E L			특수관계인이
2	특수관계인	㈜굿손	굿손	기타 외국식	20214616	22.04.15.~현재	22.04.15.에 양수함
							가맹본부가
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로스트인홍콩	치킨	20213919	21.10.28~22.04.14.	22.04.15.에 양도함
							특수관계인이
4	특수관계인	㈜로스트인	로스트인홍콩	치킨	20213919	22.04.15~현재	22.04.15.에
							양수함 가맹본부가
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에스프레소클럽 다이브	커피	20214611	21.11.05~22.04.14.	22.04.15.에
							양도함
6	특수관계인	㈜진주가정식	다이브에스프레소클럽	커피	20214611	22.04.15~현재	에스프레소클럽_다 이브에서 다이브에소프레소클 럽으로 브랜드명 변경
							가맹본부가
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쿠커리(cookery)	커피	20214956	21.11.05~22.04.14.	22.04.15.에 양도함
8	특수관계인	㈜진주가정식	엔젤비스켓	커피	20214956	21.11.15~현재	크커리(cookery)에서 엔젤비스켓으로 브랜드명 변경
9	특수관계인	㈜진주가정식	진주가정식뷔페	한식	20214217	21.11.02~현재	압구정진주에서 진주가정식뷔페로 브랜드명 변경
10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Dr치킨	치킨	20213790	21.11.02~현재	
1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가인(家人)	중식	20214418	21.11.01~현재	
1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로지(IOJI)	일식	20214330	21.11.08~현재	
1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마담타이누들	기타외국 식	20214959	21.11.15~현재	타이똠에서 마담타이누들로 브랜드명 변경
1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민들레	한식	20214218	21.11.02~현재	소티(soT)에서 민들레로 브랜드명 변경

							비리아타크스
1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타케리아마차	서양식	20213915	21.10.25~현재	비리아타코스 (Birria Tacos) 에서 타케리아마차로 브랜드변경
16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돈십자	한식	20214413	21.11.01~현재	
1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소바스키	일식	20213912	21.10.25~현재	
18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수퍼옥	한식	20213916	21.10.25~현재	
19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마라통닭	치킨	20213920	21.10.28~현재	
20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썬더버드(sun the bud)	서양식	20213902	21.10.25~현재	
2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스커트랜드	한식	20214832	21.11.10~현재	
2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요기	분식	20213921	21.10.28~현재	
2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우쌀롱	일식	20214416	21.11.01~현재	
2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차이나볼(ChinaBowl)	중식	20214826	21.11.10~현재	
2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캐비아델리	서양식	20214621	21.11.05~현재	밀크잇(mealkEAT) 에서 캐비아델리로 브랜드명 변경
26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푸릇해	음료 (커피 외)	20213787	21.11.02~현재	
2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피자플리즈(pizplz)	피자	20214618	21.11.05~현재	
28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한방이면족하다	한식	20214957	21.11.15~현재	
29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아름이네	한식	20214216	21.11.02~현재	
30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심볼(心bowl)	한식	20213922	21.10.28~24.02.13 다른 가맹본부에 양도	심볼(心bowl)에서 강탄으로 브랜드 변경
3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야키니쿠 소신 (야키니쿠 しょし)	일식	20214961	21.11.15~22.05.02	자진취소
3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반미굿손	기타 외국식	20214958	21.11.15~22.05.02	자진취소
3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우드스푼	음료 (커피 외)	20214960	21.11.15~22.05.02	자진취소
3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원샵(ONE#)	한식	20214824	21.11.10~22.05.02	자진취소
3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콘지하우스99 (CongeeHouse99)	기타 외국식	20214825	21.11.10~22.05.02	자진취소
36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로록(IOIOK)	일식	20214331	21.11.08~22.05.02	자진취소
3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말음	한식	20214619	21.11.05~22.05.02	자진취소
38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노리각	일식	20214620	21.11.05~22.05.02	자진취소
39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스모크링	서양식	20213809	21.11.02~22.05.02	자진취소
40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파스티나(Pastina)	서양식	20213806	21.11.02~22.05.02	자진취소
4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텐부리	일식	20213808	21.11.02~22.05.02	자진취소
4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스시이나리	일식	20213789	21.11.02~22.05.02	자진취소
4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제곱	한식	20213807	21.11.02~22.05.02	자진취소
4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모닝샌드	패스트푸 드	20213810	21.11.02~22.05.02	자진취소
4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남벅	패스트푸 드	20213788	21.11.02~22.05.02	자진취소
46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뉴욕스트립	서양식	20213802	21.11.02~22.05.02	자진취소
4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호텔조식당	서양식	20214214	21.11.02~22.05.02	자진취소
48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기러기식당 (ㄱㄹㄱ식당)	한식	20214215	21.11.02~22.05.02	자진취소
49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패티패티	패스트푸 드	20214219	21.11.02~22.05.02	자진취소

50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스시노리서울	일식	20214417	21.11.01~22.05.02	자진취소
5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맛나우동	일식	20214414	21.11.01~22.05.02	자진취소
5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미서브(米serve)	한식	20213933	21.10.28~22.05.02	자진취소
5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1막2잔	주점	20213931	21.10.28~22.05.02	자진취소
5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동경밥상	일식	20213934	21.10.28~22.05.02	자진취소
5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스시브리또서울 (SUSHI BURRITO SEOUL)	서양식	20213936	21.10.28~22.05.02	자진취소
56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남대문가메골손만두	한식	20213917	21.10.25~22.05.02	자진취소
5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스프콘비니	서양식	20214841	21.11.10~22.05.02	자진취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마라통닭 가맹사업 현황

1. 마라통닭을 시작한 날 : 정보공개일 현재 당사의 마라통닭의 직영점과 가맹점은 없습니다.

2. 마라통닭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캐비아에프	우산통닭	김행석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5,
(1)	1 LOEI		10.18 10	3층(신사동)
ᄼᅎ᠈ᆌᆈᅅᄱᅲ	우산통닭	김행석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주)캐비아에프	구인증한	484	(2022.10.20.주소변경)	3층(신사동)
ᄼᅎᆞᆌᆈᇬᆒᇁ	OTLECH	1 1 51 3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주)캐비아에프	우산통닭	남택호	(2023.03.01.대표변경)	3층(신사동)
ᄼᅎ᠈ᆌᆈᇬᆒᇁ		1 1 51 3	가맹사업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33,
(주)캐비아에프	마라통닭	남택호	(2023.12.28.영업표지변경)	3층(신사동)

3. 마라통닭 업종

영업표지	업종				
미니기 투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마라통닭	치킨	통닭 전문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마라통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CH	2021.12.31.				2022.12.3	1.		2023.12.3	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_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_	-	-	-	-	-	-	-	-
대전	_	-	-	-	_	_	_	_	-
울산	_	-	_	-	_	_	-	_	-
세종	_	-	-	-	-	-	-	-	-
경기	_	-	_	-	_	_	-	_	-
강원	_	-	_	-	_	_	-	_	-
충북	-	-	_	-	_	-	-	_	-
충남	-	-	_	-	_	-	-	_	-
전북	_	-	-	-	-	-	_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_	-	-	-	-	-
제주	-	-	_	_	_	-	_	_	-

5. 바로 전 3년간 마라통닭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_
2022	-	-	-	-	-	-
2023	-	-	-	-	-	-

6. 마라통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마라통닭 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٨٥١	고나게	11.4	dol I	ᄊᄌ	정보공개서	가명	맹점/직영점의	수
순위	관계	상호	영업표지	업종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굿손	기타 외국식	20214616	-	특수관계인	에게 양도
	특수관계인	㈜굿손	굿손	기타 외국식	20214616	-	4/3	8/1
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로스트인홍콩	치킨	20213919	-	특수관계인	에게 양도
	특수관계인	㈜로스트인	로스트인홍콩	치킨	20213919	-	0/1	0/1
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에스프레소클럽다이브	커피	20214611	-	특수관계인	에게 양도
	특수관계인		다이브에스프레소클럽	커피	20214611	-	0/1	-
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쿠커리	커피	20214956	-	특수관계인	에게 양도
	특수관계인	㈜진주가정식	엔젤비스켓	커피	20214956	-	-	-
5	특수관계인	㈜진주가정식	진주가정식뷔페	한식	20214217	-	=	0/1
6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Dr치킨	치킨	20213790	-	-	-
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로지(IOJI)	일식	20214330	-	-	-
8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마담타이누들	기타 외국식	20214959	-	-	-
9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민들레	한식	20214218	-	-	-
10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타케리아마차	서양식	20213915	-	-	-
1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돈십자	한식	20214413	-	-	-
1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소바스키	일식	20213912	-	-	-
1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수퍼옥	한식	20213916	-	-	-
1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심볼(心bowl) 24,02,14. 다른 가맹본부에 양도 심볼(心bowl)에서 강탄으로 브랜드 변경	한식	20213922	-	-	-
1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가인(家人)	중식	20214418	-	-	-

16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썬더버드(sun the bud)	서양식	20213902	-	-	-
17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스커트랜드	한식	20214832	-	-	-
18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요기	분식	20213921	-	-	-
19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우쌀롱	일식	20214416	-	-	-
20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차이나볼(ChinaBowl)	중식	20214826	-	-	-
21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캐비아델리	서양식	20214621	-	-	-
22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푸릇해	음료 (커피 외)	20213787	-	_	-
23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피자플리즈(pizplz)	피자	20214618	-	-	-
24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한방이면족하다	한식	20214957	-	-	-
25	가맹본부	㈜캐비아에프	아름이네	한식	20214216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의 마라통닭 브랜드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바로 전 사업 연도 말의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8. 마라통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마라통닭 브랜드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마라통닭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81	
광고	인터넷 홍보 등	2023.01.01.~2023.12.31.	81	가맹본부 전부 부담
판촉	해당 없음			광고선전비 계정 포함 기재

※ 위 금액은 당사 ㈜캐비아에프의 2023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 상 광고선전비 내역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U-뱅킹업무부	서울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1588 - 5000

귀하는 [우리은행]에서 개설된 당사의 가맹금 예치계좌을 통해서 가맹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상계좌 입금방법. 당사가 우리은행에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발송하고, 우리은행에서 귀하에게 "예치전용계좌"를 휴대폰으로 안내하면, 귀하는 전송받은 계좌번호로 가맹금을 입금하시면 예치됩니다. 둘째. 매장에 방문하시는 경우. 가맹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리은행 매장에 방문하시어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셋째, 인터넷 뱅킹이용시. 귀하는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신 후 [전체메뉴] -> [우리에스크로] -> [MY에스크로] -> [가맹금예치신청서 클릭] 하여 예치정보를 기입 후 가상계좌에 가맹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예치는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이 오픈하면 당사는 귀하로부터 영업개시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합니다. 상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경우 오픈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 익일에 당사의 통장으로 예치가맹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마라통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8,800	-	-	-
가입비	5,500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3,300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계약 종료시 계약종료 제반조치 완료확인후 6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800
가입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 50m²**(약 15평))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총계		59,255			
인테리어	협력업체(미지정)	28,050	1,870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미지정)	4,367		71 NJ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설비 및 기기	협력업체(미지정)	13,238		가맹 계약 시 개별	
집기·기물	협력업체(미지정)	7,000		게 될 계약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테이블·의자	협력업체(미지정)	3,300		계곡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초도물품 · 원부자재	협력업체(미지정)	3,300	-		상계처리 후 반환
기타물품	협력업체(미지정)	-	-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 시 설계비, 검수비			(설겨	3.3㎡ 당 3,300 비 165, 매뉴얼제공비 165)	

- ①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 추가 공사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 압, 통신설비, 소방시설,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위 표의 금액에서 장비시설 비용은 점포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④위 표의 금액 중 인테리어 시공을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할 경우 3.3㎡ 당 공간기획비(설계비 금십육만 오천원(₩165,000) 및 매뉴얼제공비 금십육만오천원(₩165,000) 총 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당사가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도 및 매뉴얼등 사양을 준수하여 설치 하여야 합니다.

- ⑥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는 설계도 및 매뉴얼을 이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상담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영업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입점 가능한 점포 설명 및 추천)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 승인여부 결정 및 통보 → 가맹희망자 최종결정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 및 당사가 정한 규정에 적합한가등에 대해 심사후 승인여부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건강진단결과서 취득가능자일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건강진단결과서 취득가능자일것

- 가맹점 사업자의 건강진단 결과로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점포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이므로, 당사에서는 가맹비등을 일절 반환 지 않습니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마라통닭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금전지급방법

가맹금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분납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납부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납부시기를 귀하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한 후 가맹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60%

단, 교육비는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위약금 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ul ±1 — =1 .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2.2%	익월 15일	후불로 반환 안됨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	개별청구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V-8. 참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개별청구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V-0. 검고
	가맹본부	1인 1일 기준 220	개별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수시교육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1인 1일 기준 220	개별청구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가맹본부	1인 1일 기준 220	개별청구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금액결정	-	-	경영방침, 유행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 (미지정)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선: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20%	일괄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있는서류 첨뷰)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시압자에게 지급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 진행 전/	VII-1. 참고
선 비용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40%	분할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뷰)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작업 진행 후에는 반환 불가	VM 1. 0-4-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비용					
POS 사용료	협력업체 (미지정)	업체 기준에 따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이율 15%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자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금전지급의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운영관리	표준매뉴얼 준수여부, 서비스, 청결, 위생, 원부재료	분기별 1회
표 6 근 니	표단배파크 단구어구, 시비ㅡ, ㅇㄹ, ㄲㅇ, 현구세표	문제발생시
시설관리	점포 내외관, 각종 설비, 홍보물	분기별 1회
시크린니	검포 네피먼, 역중 글씨, 중포골	문제발생시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고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갱신 가맹비	없음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3일 이전에 계약 해지	-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결정	점포 이전 7일 이전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양수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양수가맹비 금 백십만 원(₩1,100,000), 교육비 금 사백사십만원(₩4,400,000), 계약이행보증금 금 이백만원(₩2,000,000) 등을 양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협의된 기간 이내(별도 협의 없을시 14일)에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 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기간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1년 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계약종료일에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중단일로부터 1년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영업지역)에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점포"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 확인증을 가맹본부에 제출해야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완료와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반환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잔존채무액 및 기타 채권액을 정산한 잔액을 반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종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재고량, 오. 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외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39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마라통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마라통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수 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마라통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마라통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가맹점에 개별 공지하는 메뉴 <별표 4 메뉴판 참고>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서면 시정요구 후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변경하여 메뉴에 대한 만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타 가맹점사업자	011 = 2 011 110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경쟁업체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서면 시정요구 후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요르면 답장	가맹본부	계열회사
통닭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마라통닭 Dr치킨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별도의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영업지역으로 인정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재조정 사유 발생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영업지역 변경(안)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경우	작성 → 가맹점사업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	자에게 서면 통지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동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	의 → 영업지역 변	완료
	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 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 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마라통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마라통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 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 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앱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5조의 가맹점 주소지 및 영업지역을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미	배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마	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마라통닭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에는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 로열티는 물가상승등 경제여건의 변화나 당사의 서비스변화등을 고려하여 로열티의 인상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갱신이나 연장일 90이전까지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①+15일 이내

까?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 COOL 이저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4항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계약 해시 사유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 로 변경하는 경우	고조 그하나 그하나	
로 변경하는 경우	3소 2영~3영	26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	4조 3항	각 호
지를 사용하는 경우	4소 3명	

응급품, 가맹점설비등 영업표지를 훼손하거나 변경한경우 5조 5황 1 5조 5황 1 5조 5행 1			
타장소에서 "갑"이 메뉴 판매시 "울" 점포에 포스터등 판촉물 부착 협조요청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조~18조 기행검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개점 지연 및 지체되어 계약후 3개월 이내 개점을하지 못한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개점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대접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미이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하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경보공재서상 동일 사업 경영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경보공재서상 등일 사업 경영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연설표자,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번경 기생본부명 입점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가맹본부명 입점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가맹본부가 안점소살로 및 임의도용행위 가맹본부가 안점소살로 및 유기적 가맹점 사업자 회의 미참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결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결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중이 및 부정기적 가맹점 사업자 회의 미참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결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장면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중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구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25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25조 기행점사업자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입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기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25조 기행점사업자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입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25조 기행점사업자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입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기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25조 기행적사업자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입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입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공급품, 가맹점설비등 영업표지를 훼손하거나 변경한경우	4조 4항	
으나 거부한 경우. 가맹접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악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기7조~18조 기7조~18조 기명접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개점 지연 및 지체되어 계약후 3개월 이내 개점을 하지 못한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개점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개접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미이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하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정보공개서상 동일 사업 경영 -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표지,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번경 - 가맹본부의 입접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가맹본부의 입접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가맹점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광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소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및 27~28조 - 가행점사업자가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및 27~28조	영업지역내 서면동의 없이 점포위치 이전 및 면적 확장,축소한 경우	5조 5항	
/ 방점사업자가 공급품 내금 및 기타 내금의 약정한 답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개점 지연 및 지체되어 계약후 3개월 이내 개점을 9조2항 하지 못한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개점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개점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경우 기맹점사업자가 대접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미이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하기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상 동일 사업 경영 -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표지,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변경 가맹본부 명성 손상 및 임의도용행위 - 가맹본부의 입점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 가맹점사업자가 경기 및 부정기적 가맹점 사업자 회의 미참석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만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인접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자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중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혐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혐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혐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사전혐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사전혐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사전혐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사전혐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사전혐의 전우 전우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간식용등 식제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5조 9항	
하지 못한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개점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미이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하기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상 동일 사업 경영 -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표지,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빈경 - 가맹본부 명성 순상 및 임의도용행위 - 가맹본부의 입점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 및 부정기적 가맹점 사업자 회의 미참석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만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인점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유일상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유일상을 제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스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어제로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어제로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어제로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상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상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상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마이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미이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하기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상 동일 사업 경영 -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표지,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변경 - 가맹본부의 입점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 가맹본부기 만점소사가 정기 및 부정기적 가맹점 사업자 회의 미참석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만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인점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중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료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중업원 간식용등 식재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가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기 않는 경우		9조2항	
미이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하기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상 동일 사업 경영 -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표지,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변경 - 가맹본부의 입점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맹본 가 업지 및 부정기적 가맹점 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합점조사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입점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경우 당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전달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산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개점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경우	10조6항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상 동일 사업 경영 -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표지,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변경 - 가맹본부 명성 손상 및 임의도용행위 - 가맹본부의 입점조사 거부,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거부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입점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조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무점으라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공입원 간식용등 식재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용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18조 5항	
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 및 부정기적 가맹점 사업자 회의 미참석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입점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전달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조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이내로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수재료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등을 즉시 페기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간식용등 식재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하기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정보공개서상 동일 사업 경영 -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영업표지, 디자인, 저작물등 임의변경 - 가맹본부 명성 손상 및 임의도용행위		
- 가맹본부가 입점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것으로 본다.)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전달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조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기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식재료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간식용등 식재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27~28조	배상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다.) - 가맹점 사업자가 정기 및 부정기적 가맹점 사업자 회의 미참석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판매실적등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미제공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위반	제21조	
-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전달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조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식재료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간식용등 식재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가 입점조사시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22조	
- 가맹점 사업자가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간식용등 식재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전달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조리방법, 레시피에서 정한 재료, 부재료의 양 비율을 준수하지 	23조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식재료의 품질관리 및 적정온도 준수하여 보관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을 경우 (상기사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간식용등 식재도 포함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25조	
	- 가맹점 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	27~28조	
	시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배달영업 및 포장판매를 진행하였을 경우	29조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운영수준저하 및 컴플레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배달영업 및 포장판매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가맹본부가 중지요구 하였으나 준수하지 않았 을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컴플레인 혹은 입점조사에서 나타난 위생위반사항 및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해결 혹은 시정하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명성관리를 위해 "점포"에 제기된 컴플레인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개입하여 해결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가맹점자 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생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거나 지속클레임이 발생하여 재교육 혹은 일정기간 영업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한 경우	30조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내외부시설 및 기기 청결 유지관리가 미흡하거나 점포환경개선 사유 발생하여 가맹본부가 교체 및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가맹점 설비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시설등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31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를 성실하게 작성 및 유지하지 않았거나, 가맹본부가 월별, 업체별, 공급품별, 연매출액등 자료 제공 요청하였으나 이를 5일 이내 서면으로 제공 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가 상기 관련 자료를 확인 및 기록을 위해 출입, 조사를 시행하였으나이를 거부 한 경우	32조
- 가맹점사업자가 변동사항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3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납입기일(2주일내)을 경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 및 공동광고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판촉물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5조 2항~ 3항,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승인없이 게시물등을 가맹점 내외부 부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승인없이 가맹점을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숙박등)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승인없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개설 운영하는 경우 (SNS, 블로그등) - 가맹점사업자가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협력업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미수금이 이행보증금의 50%를 초과한 경우	36조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 및 명의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양도 및 명의변경등에 앞서 60일전에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경영에 대해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위탁경영, 대리 행사, 사업자명의등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한 매출 매입을 확인할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맹	42조

본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지금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가맹본부	4 E 天
가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4511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5조 20호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3~4항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귀하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운영 기준을 준수	양수.양도 계약 체결(15일 소요) → 개점 전 교육 실시(점주/종업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고 양수가맹비 금 백십만원(₩1,100,000), 교육비 금 사백사십만원(₩4,400,000), 계약이행보증금 이백만원(₩2,000,000) 등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 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제3자에게 대리행사 또는 업무위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상속 가능 조건	상속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상속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기존 가맹점 사업자,		
기준을 준수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1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인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에 따른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고 교육비 금 삼백삼십만원(₩3,300,000)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 이백만원(₩2,000,000)를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마라통닭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라통닭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계약이 정료된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 영업 지역에서 당사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통닭을 취급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마라통닭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02:00 (14시간)	연중무휴	마라통닭의 이미지나 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자율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분기 또는 월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 분기 또는 월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분기 또는 월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마라통닭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 과그 서거		부담비율		ㅂㄷ, 저+1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및 예산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광고비용 사용내역 공지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가맹점사업자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	-	
교호센터	공동 판촉활동	기획비용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행사계획 및 예산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판촉행사 	개별 판촉활동	-	관련 제작실비 전액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확정된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	

제휴서비스		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
세류시미=		금				

※ 가맹점사업자 <u>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u>이 시행 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에는, 귀하는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①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②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 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 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 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등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23조 제1항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 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해지 사유(즉시해지사유 포함)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서 [잔존개월 X 직전 개월 당사에게 지급해야 할 로열티로 책정된 금액 X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귀하가 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가맹계약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가맹계약에 대한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35조 4 C하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협의된 철거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고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협의된 철거기한의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 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게 지 불하여야 한다.	1~6항
당사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 귀하 또는 귀하 직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 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와 당사의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귀하에게 그 배상 책임이 있다.	
귀하가 제35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9조 1항

12. 가맹본부의 CCTV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CCTV 자료 열람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CCTV자료 자료 열람의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1)고객클레임 발생 시 자료 활용
- 2)가맹점 위생 및 제품 제조과정 및 제품상태를 확인

단, 가맹본부는 영업시간내 자료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가맹점사업 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혐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유선/온라인 문의, 상담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IV.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1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1. 영업개시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작성	D-30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금 지급	- 가맹금을 가맹본부 지정계좌로 입급 (가맹금 지급 보증보험 수령)	D-3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0~29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9 ~ 4(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D-9 ~ 4(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W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 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 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으로서 장비·집기의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가맹점사업자에게지그	점포환경개선일로부 터 3년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 장을 주는 경우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맹 점사업자가 추가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 요되는 비용은 제외	는 점포환경 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포환경개선: 40%	지급 (단, 별도 합의시 1 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점포환경개선이 끝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사유로 계약이 종료 (해지, 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본 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이미 지급 한 경우 환수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 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특별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 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개별 가맹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마라통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경영상의 필요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 협의	선택 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마라통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총 5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1인 1일 기준 2,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협의	1인 1일 기준 2,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요청시 실시
재교육		1인 1일 기준 2,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당사의 마라통닭 브랜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운영한 직영점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해당 표는 원재료의 상승, 판매촉진행사, 메뉴의 추가 및 삭제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5>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6>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 (주)	냄비아에프로	릳부터	마라	통닭	정보공개	너(인근	가맹점사	업자
현:	황 및 기	기타 별첨	문서	포함)를	Ļ	년	월	일,			

로

시 구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	'대표(담당자) 성명:
-----------	--------------

-----간인 후 절취------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주)캐비아에프로부터 마라통닭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및 기타 별첨 문서 포함)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

인